서울지방고용노동청 북부지청(공시송달) 공고 제2024-67호

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종료 및 재참여제한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

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중 상담요청 출석통지(2회차) 불응 및 연락두절로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등기 송달하였으나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.

2024. 7. 26.

서울지방고용노동청 북부지청장

1. 건 명: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종료 및 재참여 제한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
2. 근 거: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및 제29조 제1항 제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 제1호, 행정절차법 제14조
3.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

연번	성명 (생년월일)	서류의 명칭	서류의 주요내용			송달불능 사유	주소
			예정된 처분의 제목	처분사유	처분하고자 하는 내용		
1	서*은 (2000.03.04.)	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종료 및 재참여제한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	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종료 및 재참여 제한	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지원서비스 진행을 위한 방문상담의무 불이행 1차 출석통지: 24. 7. 16. 2차 출석통지: 24. 7. 22.	○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종료 ○ 종료일로부터 3년간 국민취업지원제도 재참여제한	폐문부재	서울특별시 도봉구 (이하 생략)

4. 공고기간: 2024. 7. 26. ~ 2024. 8. 9(15일간)
5. 기타사항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북부지청 서울북부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제도 담당자 박지선(☎ 02-2171-1875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